

의안번호	2212749
의 퇴 인	최민희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8.
추계번호	25B4828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)	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<u>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(제1항)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<u>위원</u>으로 구성함.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, 특정 성(性)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음(제2항)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</u>이 됨. <u>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(常勤)으로 함</u>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8조(위원회의 기능)	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함(제1항) 2. 인공지능등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<u><신 설> 2의2.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</u>에 관한 사항 <u><신 설> 2의3.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<신 설> 6의2.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</u>	의무규정
3	안 제10조(분과위원회 등)	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(제4항 신설)	재량규정
4	안 제22조의2(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) 신설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,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음. 이 경우 대학,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(제1항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·보조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·의무 규정 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(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)	•미대상 - 개정안은 현행 「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35735호, 2025. 9. 4. 제정·시행)¹⁾²⁾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위원 구성,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	안 제8조(위원회의 기능)	
	안 제10조(분과위원회 등)	
2	안 제22조의2(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) 신설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 1) 「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35735호, 2025. 9. 4. 제정·시행)의 제정으로 종전의 「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 및 조직 규모 등이 확대·개편되었음
*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은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임

- 2) 「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인공지능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2.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
3.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4.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5. 인공지능 관련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6.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
7.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
8.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
9. 인공지능의 공정성·투명성·책임성·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10.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·제도에 관한 사항
11.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·노동·경제·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
12.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·관 협력 및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
13.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14. 제조업·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
15.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16. 인공지능 분야 경제안보 및 기술 보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17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2. 상세 사유

□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(안 제22조의2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, 기업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·운영하고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·보조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이러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연구소의 수 및 조직 규모, 운영방식,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규모, 정부·지방자치단체의 출연·지원·보조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개정안은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, 운영,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,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·운영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

[표 1]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사업내용	2026(안)
AGI 준비 프로젝트	세계적 수준의 국내 연구진 역량을 집약하여, 혁신적 AI 연구에 과감히 도전, 실질 성과를 낼 수 있는 국가 AGI* 연구소 설립 추진 *AGI(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, 범용 인공지능)	20,000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Ⅱ-1)
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.
1. 기획재정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교육부장관, 외교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산업통상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
 2.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
 3. 국가안보실 제3차장
 4. 인공지능 관련 기술·경제·인문·사회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
 -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.
 - ⑤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(常勤)으로 한다.
- 제9조(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) ①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